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39
----------	-----

2023년 6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김지향 의원 외 49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6월 22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지향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난 5월, 보다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구체화, 다회용품 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용역계약이나 보조금을 통해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세척 및 물류, 용기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에 활용이 어려워 다회용품 관련 스타트업과 다회용품 세척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 등의

지속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따라 시장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회용품 사용의 적극적인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다회용품 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이나 무상제공이 가능한 시설이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줄이거나 다회용품 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이나 무상제공이 가능한 시설이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줄이거나 다회용품 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회용품 활용시설의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활용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안 제7조2	· 민간위탁 규정 신설(다회용품 활용시설)
안 제8조제2항	·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활용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나. 검토 의견

- 안 제7조2는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다회용품 활용 촉진을 위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현재까지 다회용품 활용(세척 등)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이나 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 규정을 우선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다회용품 활용 시설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안 제8조제2항은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각호에 따른 시설이나 업종의 사업자가 1회 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을 활용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은 식품접객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품 제공 금지를 규정한 것이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¹⁾ 등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상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줄이거나 다회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개정 취지나 내용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현행조례 제7조(지원사업)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므로, 안 제8조 제2항과 이를 통합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6. (생략)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생략)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시장은 <u>민간기관·단체,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7조의2(민간위탁)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u>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p>제7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u>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u></p>
<p>제8조(시민과 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 ① (생략) ② <u>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이나 무상제공이 가능한 시설이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품을 줄이거나 다회용품 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① (조례안과 같음) <u><삭 제></u></p>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다회용품 활용 시설과 관련한 서울시의 계획수립 없이 민간위탁 규정부터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안 제7조2의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만 시장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39
----------	-----------

제안년월일: 2023년 6월 22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다회용품 활용 시설과 관련한 서울시의 계획수립 없이 민간위탁 규정부터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안 제7조2의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만 시장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민간의 관련 사업 추진 시, 시장의 행·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민간위탁 규정 삭제 및 시장의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또는 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민간기관·단체가”를 “민간기관·단체,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시민과 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를 “(시민 참여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시장은 <u>민간기관·단체</u>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민간위탁)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u>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u></p>	<p>제7조(지원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u>민간기관·단체,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7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u>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u></p>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시민과 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이 나 무상제공이 가능한 시설이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줄이거나 다회용품 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①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간기관·단체가”를 “민간기관·단체,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시장은 <u>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민간기관·단체,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u> <u>-----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제7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u></p>